

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4. 13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2011.11.30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21(서)-083)

-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적용 기준, 별정통신사업자의 손실보전금 분담을 위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- ① '12. 2. 28. 개정 시행된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적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(안 제4조)

-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: 월 통화료 50% 감면

- 기초생활수급자 :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, 통화료 150도수 감면

- ②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는 '11회계년도부터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분담사업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명확화(안 제2조)

- 매출액 기준 : '별정통신매출액'에 '자가소비사업용수익'을 합한 금액

- ③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 양식을 간소화하고, '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' 내용을 정비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(안 제4조)

○ 향후 일정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. 4. 18.

나.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- (2012-21(서)-084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의거, SK텔레콤(주)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 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인가 내용 >

구분	협 정 명
1	SKT(이동전화)와 티온텔레콤(TRS)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
2	SKT(이동전화)와 KCT(인터넷전화)간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상호접속협정
3	SKT(이동전화)와 드림라인(국제전화)간 국제전화 및 국제선불카드 상호접속협정

- ① SKT와 티온텔레콤간 C2P SMS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준('05.6월) 구축·운영되고 있는 티온텔레콤의 TRS망과 SKT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C2P SMS*를 제공

* C2P(Computer to Phone) SMS : 기업체 등이 홍보, 고객관리 등을 위해 컴퓨터로 작성한 SMS를 다수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발신해 주는 서비스
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티온텔레콤이 제공사업자인 S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9원/건으로 양사 합의

② SKT와 KCT간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('07. 5월) 구축·운영되고 있는 SKT의 이동전화계망과 KCT의 인터넷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전국대표번호서비스(1877)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SKT가 KCT에게 지급하며, 음성은 '11년 인터넷전화 접속요율인 10.4813원/분으로 적용하고, SMS는 5원/건으로 양사 합의

③ SKT와 드림라인간 국제전화 및 국제선불카드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접속이용사업자(드림라인)의 국제교환기(잠실 한빛센터)로부터 접속 제공사업자(SK)의 이동중계교환기(성수, 수유)까지 접속회선 구성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드림라인이 SKT에게 지급하며, 접속 통화요율은 '11년 SKT 이동전화 요율인 30.5015원/분으로 적용
- (부대서비스 비용) 국제전화 발신시 징수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은 SKT가 대신 징수하고, 드림라인은 회수대행수수료(과금액의 3.2%)를 지급하기로 양사간 합의

다. 「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신청절차 및 방법」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21(서)-085)

- o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전화를 추가하고,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

① 정부지원 신청방법에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 추가(안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)

- 디지털방송 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지원 신청 방법에 '전화'를 추가

현 행	개정안
직접방문, 등기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홈페이지 등	직접방문, 등기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홈페이지, 전화 등

②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시 처리절차 마련(안 제7조2)

- (납입기간) 정부지원 대상 확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가부담금을 납입 하도록 하되, 이 기간 중 미납입시 10일 이내의 추가납입기회를 1회 이상 제공

※ 입법예고시에는 **추가납입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나**, 정부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임이므로 자가부담금 납입기간을 **충분히 제공할** 필요가 있다는 규개위 실무 의견을 반영하여 **10일로 수정**

- (미납시 처리절차) 방통위가 지정하여 통보한 추가납입일까지 자가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TV 구매보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되, 디지털TV 구매보조를 계속 원할 경우 재신청 가능

현 행	개정안
< 신 설 >	·디지털TV 구매보조를 신청한 경우 정부지원 대상 확인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자가 부담금 납입 ·자가부담금 미납입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1회 이상 추가납입기회 제공 ·추가납입일까지 미납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되, 재신청 가능

○ 향후일정

- 관보게재 및 시행 : '12. 4. 19.

라.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2-21(서)-086)

- 방송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총 9인의 후보자를 제1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함
-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(총 9인)

분 야		성 명	성별	현 직	비고
위원장	방송	최 양 수	남	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	신규
위원	방송	성 동 규	남	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	신규
		이 영 주	여	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	신규
	경제경영	김 상 택	남	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	신규
		전 영 섭	남	서울대 경제학부 교수	신규
	법률회계	윤 희 웅	남	법무법인 올촌 변호사	신규
		서 동 규	남	삼일회계법인 회계사	신규
	기타	변 상 규	남	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	신규
		임 춘 성	남	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	신규

※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